

1. 제정이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9151호, 2022. 12. 30. 공포, 2023. 12. 31. 시행)됨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별 회수·생산계수, 과징금 감면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기성 폐자원별 발생량 회수·생산계수 산정(안 제3조, 별표)

- 1) 하수찌꺼기,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은 실제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되, 가축분뇨(돈분)는 ‘사육두수×배출원단위’를 통해 발생량을 산정
- 2) 공공의 가축분뇨(돈분) 회수계수는 돈분 공공처리율을 반영하고, 생산계수는 시설별 생산 현황 및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규정

나. 공공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시 인정비율(안 제4조)

생산량 구입 실적의 90%만 의무생산자의 생산량으로 인정

다.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절차(안 제5조)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거래하는 경우,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바이오가스센터의 장이 절차를 관리하도록 규정

라. 과징금 감면 대상 구체화(안 제6조)

- 1) 1,000Nm³/일 이상 규모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착공한 경우
- 2) 관내 발생 유기성 폐자원 전량을 바이오가스화 하더라도 생산량이 1,000Nm³/일 이하인 경우

마. 적합성 평가 및 배출량 등 확정(안 제8조)

- 1) 바이오가스센터는 보고된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 생산목표제 관련 실적 정보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확정
- 2) 제출 자료와 관련하여 필요시 시정·보완 및 시험·검사 등을 거치며, 확정된 정보는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의무생산자에게 통지

바. 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등록(안 제9조)

비의무생산자도 거래신고서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바이오가스센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생산실적을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

사. 지역 주민참여의 범위·기준(안 제14조)

범위는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투자금 총한도는 시설 설치비용의 10% 이하, 투자자별 한도는 세대당 3천만원 이하로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유기성 폐자원을 혐기성 분해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 생산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제3조(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회수·생산계수의 산정)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공공의무생산자의 하수찌꺼기 및 분뇨 발생량: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별 하수찌꺼기 발생량 및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별 처리 책임이 있는 분뇨 발생량
2. 공공의무생산자의 가축분뇨 발생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별 관할 구역의 돼지 사육두수에 돼지 분뇨 배출원단위를 곱하여 산정한 양
3. 민간의무생산자의 가축분뇨 배출량: 사업자별 돼지 사육두수에 돼지 분뇨 배출원단위를 곱하여 산정한 양
4. 민간의무생산자의 가축분뇨 처리량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설치한 가축분뇨 처리시설별 돼지 분뇨 반입량
5. 공공의무생산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별 처리 책임이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6. 민간의무생산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 사업자별 처리 책임이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회수·생산계수는 별표의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의 산정) ①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90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는 제8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이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라 한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이상인 경우에 해당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해당 연도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① 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제11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에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등록된 자료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받아 생산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신고서(이하 “거래신고서”라 한다)를 제11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법 제17조에 따른 바이오가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래한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양 및 가격
2. 거래 일시, 거래자 정보
3.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합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상속이나 법인의 합병 등 거래에 의하지 않고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제공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거래신고된 내용이 제11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양도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부족 등의 사유로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거래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바이오가스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과징금의 감면대상)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란 1일 바이오가스 생산가능규모가 1000Nm^3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또는 비율 이하인 경우”란 공공의무생산자 중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유기성폐자원 발생량에 회수·생산계수를 곱한 값의 합이 $365,000\text{Nm}^3$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7조(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11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유기성 폐자원 종류별 발생량, 배출량 또는 처리량
2. 직전 연도의 유기성 폐자원 종류별 처리 방법과 처리량
3.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직전 연도 운영현황

가. 유기성 폐자원 종류별 반입량 및 반입출처

나. 바이오가스 생산량

다. 바이오가스 이용처 및 이용량 등

4. 직전 연도에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아닌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위탁처리한 유기성 폐자원의 종류 및 양(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아닌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위탁처리한 유기성 폐자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직전 연도에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처리하여 배분받은 바이오가스 생산량(제10조에 따라 배분받은 생산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정·보완을 명하는 경우에 시정·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이를 완료하여야 할 시기를 해당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적합성 평가 및 배출량 등의 확정) ① 센터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보고한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그 양을 확정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성을 평가할 때 제출받은 실적보고와 증빙자료에 흠이 있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해당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유기성 폐자원 또는 생산되는 바이오가스의 성분 등의 검사를 위해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험·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시료를 시험·분석하게 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시험·분석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분석기관

④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이하 “생산실적”이라 한다)을 제11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해당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보고에 대한 적합성 평가 및 배출량 등의 확정·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생산량 등록) 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5조에 따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현황을

제11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현황을 제출한 경우에 제8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여 해당 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배분) ①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확정된 생산량을 자신의 생산량이나 해당 시설에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처리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생산량으로 배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량 배분은 유기성 폐자원 반입량 및 회수·생산계수 등에 기초하여 배분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배분한다.

③ 제1항부터 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생산량 배분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각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및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 나. 법 제9조에 따라 보고된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
 - 다. 제8조에 따라 확정된 생산량
 - 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미달성분 및 과징금 산정 등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라 거래된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양과 가격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량 배분에 관한 사항
 5.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6.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에 대한 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센터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유기성 폐자원 발생, 처리 및 바이오가스 생산에 관계된 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에 관한 통계자료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 평가결과의 중요사항 등을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종합정보시스템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시설운영 등에 관한 평가) ① 센터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1. 악취관리 등 시설운영의 환경성
2.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 등 기술성
3. 안전교육, 위험관리 등 안전성
4. 기타 바이오가스 이용 현황, 정책이행도 등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및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유기성 폐자원의 병합활용기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용으로 재배한 작물이나 그 밖에 혼합 가능한 식물성 물질을 전체 유기성 폐자원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병합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지역 주민참여의 범위·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은 해당 시설설치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주민이 출자 방식 등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범위에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이 정한다.

1. 투자금의 총한도: 바이오가스 생산 또는 이용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이하

2. 투자자별 한도: 세대당 3천만원 이하

③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참여하는 지역 주민과 사업자가 출자 및 출자비용을 고려한 수익제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합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역주민의 참여 및 수익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바이오가스센터의 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5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

3. 제12조에 따른 시설운영 등에 관한 평가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센터는 통계, 시설 검증, 운영평가, 회계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법이 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필수적인 비용을 출연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매년 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⑤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과징금의 부과·징수 대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자료의 내역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6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회수·생산계수 산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유기성 폐자원	회수계수		생산계수(Nm ³ /톤)
하수찌꺼기	1.0		43
분뇨	1.0		5
가축(돼지) 분뇨	공공	0.14	13
	민간	1.0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	1.0	100
	민간	1.0	

비고: 생산계수는 연간 바이오가스 생산 현황, 생산목표를 달성도, 국내 바이오가스화 기술 수준 및 그 밖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